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의무화 확대 등 〉
■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764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의무화 확대	3
2. 형식승인·검정 업무 수행체계의 위탁 전환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	5
※ 참고자료	14
1. 기상관측시설 현황	14

I. 제안경위

2026년 4월 30일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2026년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관측기관이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기상측기를 기상관측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기상관측,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기상관측, 관측기간이 1년 이하인 임시적 기상관측, 해양기상관측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국가 및 공공기관의 기상관측 정확도 확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형식승인된 기상측기의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기상측기 형식승인 및 검정업무는 대행기관을 통하여 수행되고 있는데,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방식을 대행에서 위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 등 기상관측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기상관측에 형식승인을 받은 기상측기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종전의 “형식승인대행기관”을 “형식승인기관”으로, “검정대행기관”을 “검정기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기상측기 형식승인 및 검정 관련 업무 위탁 및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상측기 형식승인 및 검정 업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제12조의4 및 제14조 등).

Ⅲ. 검토의견

1.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의무화 확대

개정안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상관측에 사용되는 기상측기도 형식승인(현행법 제12조의2)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2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대상) ① (생략)	제3조(적용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관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관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제12조의2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3조제2항은¹⁾ 교육 또는 연구, 국방상의 목적 등에 해당하는 기상관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측에는 형식승인²⁾ 기상측

1) 현행법 제3조(적용대상)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관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기상관측
2.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기상관측
3. 그 밖에 임시적 기상관측 또는 특수한 목적을 위한 기상관측

2) 현행법 제12조의2(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등) ①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그 제작 또는 수입 전에 해당 기상측기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하여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

기 사용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임을 받은 시
행령³⁾에서는 교육·연구, 국방, 1년 이하 임시관측, 해양기상관측 등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법 적용제외 분야의 관측자료도 정책수립이나 재난대
응에 활용되는 만큼 기상측기의 성능 확보가 중요하므로, 모든 기상측
기에 대해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여 기상관측의 정확도 및 신뢰성⁴⁾ 향
상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형식승인 의무의 전면 확대와 관련하여 공적 활용도가 낮은
순수 교육·연구 또는 단기 임시관측까지 모두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규제 목적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고, 관계부처에서도 집행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⁵⁾.

상측기로서 기상청장이 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기상측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 ③ 중간생략.

④ 관측기관은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상측기를 기상관측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기상측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형식승인·변경승인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3) 현행법 시행령 제2조(적용대상) 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기상관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기상관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실험·실습 또는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상관측

나. 기상측기의 성능을 비교·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상관측

2. 전투·군사훈련 그 밖에 국토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행하는 기상관측으로서 비
정기적으로 행하여지거나 그 보안유지가 필요한 기상관측

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조사를 위하여 하는 해양기상관측

4.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를 이용하여 해양교통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
으로 행하는 해양기상관측

5. 기상관측의 관측기간이 1년 이하인 것

4) 23억 들인 미승인 강우량계... 허술한 관리·감독, KBS 9시뉴스, '25.10.18.

5) (국립해양조사원) 형식승인 의무화 시 장비의 발주·도입·설치에 약10개월이 소요되어 회계연도 내 국
가해양관측망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기존 장비를 철거하여 형식승인을 받는 동안 해양관측이 중단

또한, 법제적 측면에서 개정안 제3조제2항은 ‘(제12조의2는 제외한다)’를 삽입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배제규정에 대한 예외를 다시 ‘제외한다’는 부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배제의 배제(이중부정)’ 구조로서 제12조의2의 형식승인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언상 곧바로 드러나지 않는 점이 있으므로, 개정안 제3조제2항의 개정보다 현행법 제12조의2에 제6항을 신설하는 방식이 보다 적절해 보임⁶⁾.

2. 형식승인·검정 업무 수행체계의 위탁 전환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개정안은 형식승인·검정 업무의 수행방식을 현행 ‘대행’에서 ‘위탁’으로 전환하고, 위탁 및 재정지원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제14조, 제26조의2 신설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의4(<u>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등</u>) ① 기상청장은 형식 승인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제12조의4(<u>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등</u>) ① ----- -----

되어 해상교통안전·수산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현행 유지 의견을 제시함
(국방부) 군 작전상 필요하나 형식승인 기준에 미달하는 장비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을 요청함

6) 제12조의2제6항: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관측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u>형식승인대행기관</u>을 지정하여 형식승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u>형식승인대행기관</u>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기상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u>형식승인대행기관</u>”이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u>형식승인대행기관</u>이 적절하게 운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u>형식승인대행기관</u>에 출입·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 ----- -----<u>형식승인기관</u>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u>형식승인기관</u>의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u>형식승인기관</u>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u>형식승인기관</u> ----- -----. ③ ----- -----<u>형식승인기관</u>----- ----- -----. ④ -----<u>형식승인기관</u>----- -----<u>형식승인기관</u>----- -----.

현행	개정안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u>형식승인대행기관</u>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방법·절차 및 출입·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5(<u>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u>) ① 기상청장은 <u>형식승인대행기관</u>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생략) 제14조(<u>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u>) ① 기상청장은 제13조에 따른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u>기상측기를 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검정</u>	⑤ -----<u>형식승인기관</u>----- ----- ----- -----. 제12조의5(<u>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u>) ① -----<u>형식승인기관</u>----- ----- ----- ----- -----.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u>검정기관의 지정 등</u>) ① ----- ----- -----<u>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u> 다만, 제15조제1항에 따

현행	개정안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③ (생략) ④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u>검정대행기관</u>”이라 한다)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u>검정대행기관</u>을 출입·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상청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u>검정대행기관</u>의 검정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기상청장은 <u>검정대행기관</u>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검정기준을 위반하여 <u>검정업무를 대행한</u>	라 <u>검정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검정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②·③ (현행과 같음) ④ -----<u>검정기관</u>----- -----<u>검정기관</u>----- ----- ---. ⑤ ----- -----<u>검정기관</u>----- ----- -----. ⑥ -----<u>검정기관</u>----- ----- ----- -----. 1. ----- -----<u>검정업무를 수행한</u>

현행	개정안
<u>경우</u> 2.·3. (생략) 4. 제22조의2에 따른 검정수수료 기준을 위반하여 제1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u>검정업무</u>를 대행한 경우 제15조(<u>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u> 등) ① 기상청장은 <u>검정대행기관</u>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략) ② (생략) 제16조(검정증인) 기상청장 또는 <u>검정대행기관</u>은 검정에 합격한 기상측기과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정이 면제된 기상측기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증인(檢	<u>경우</u> 2.·3. (현행과 같음) 4. ----- ----- -----<u>검정업무</u> 를 수행한 경우 제15조(<u>검정기관의 지정 취소</u> 등) ① -----<u>검정기관</u>----- ----- ----- ----- ----- ----- -----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검정증인) ----- -<u>검정기관</u>----- ----- ----- ----- -----

현행	개정안
定證印)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형식승인대행기관 또는 검정대행기관</u>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2. (생략) 제25조(증표의 제시) 다음 각 호의 출입과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생략) 2. 제12조의4제4항에 따른 <u>형식승인대행기관</u>의 출입·조사 3. 제14조제4항에 따른 <u>검정대행기관</u>의 출입·조사 3의2. ~ 5. (생략) 제26조(청문)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2조의2(수수료) ----- ----- <u>형식승인기관 또는 검정기관</u>----- ----- ----- ---. 1. 2. (현행과 같음) 제25조(증표의 제시) ----- ----- ----- ----- -----. 1. (현행과 같음) 2. -----<u>형식승인기관</u>----- 3. -----<u>검정기관</u>----- 3의2. ~ 5. (현행과 같음) 제26조(청문) ----- ----- ----- -----.

현행	개정안
1. (생략) 2.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u>형식승인대행기관</u>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3. 제15조에 따른 <u>검정대행기관</u>의 지정 취소 또는 검정업무의 정지 <u><신설></u>	1. (현행과 같음) 2. -----<u>형식승인기관</u>----- 3. 제15조제1항-----<u>검정기관</u>-----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상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업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는 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상측기 등의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의제) ----- ----- ----- -----.
1.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임원 및 형식승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1. <u>형식승인기관</u> ----- ----- -
2. <u>검정대행기관</u> 의 임원 및 검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2. <u>검정기관</u> ----- -----

현행법상 기상측기의 형식승인·검정 관련 업무는 기상청장이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있는데, 대행기관으로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지정됨.

개정안은 현행 ‘대행⁷⁾’으로 수행되는 형식승인 및 검정업무를 ‘위탁⁸⁾’으로 전환하여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으로 수행기관(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여 기상측기 및 관측자료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7) 행정기관이 상대방에게 권한을 넘겨주지 않고 자신이 그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면서 다만, 그 업무의 수행만을 맡기는 것

8)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의하더라도 전문성이 필요한 검정·인증 업무는 대행보다 위탁이 적절하다는⁹⁾ 행정업무의 위임·위탁 기준에 부합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¹⁰⁾이 ‘검사·검정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위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현행법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으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위탁도 그간의 전문성과 시설을 갖춘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사실상 계속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형식승인 및 검정업무의 일관성 확보 측면에서 해당 기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42

9) 「법령 입안 심사 기준」(2026, 법제처)> 515쪽

해당 업무가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검정·인증 등에 관한 것이어서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것이라면 행정업무의 대행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검정·인증 등을 위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업체에 행정관청이 인허가를 하고 해당 인허가를 받은 업체의 검정·인증 등을 받도록 하는 방식의 제도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10)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② (생략)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참고자료 1

기상관측시설 현황('25.12월 기준) / 28개기관 5,304개소

(단위: 개소)

구 분	AWS (Automatic Weather System)	강수량계	대기환경측정용 기상관측장비	기타 (적설계, 풍향풍속계 등)	합계
국가기관(5)	1,391	527	107	12	2,037
기 상 청	651	100	-	12	763
기 후 부	-	427	107	-	534
국 토 교 통 부	11	-	-	-	11
농 촌 진 흥 청	218	-	-	-	218
산 림 청	511	-	-	-	511
지방자치단체(17)^{*사군구 포함}	474	1,639	599	157	2,869
서 울 특 별 시	-	124	40	-	164
부 산 광 역 시	16	16	32	-	64
대 구 광 역 시	1	49	26	-	76
인 천 광 역 시	6	33	33	-	72
광 주 광 역 시	-	14	13	-	27
대 전 광 역 시	2	11	15	-	28
울 산 광 역 시	-	25	22	20	67
세종특별자치시	1	13	6	-	20
경 기 도	152	193	122	52	519
강원특별자치도	-	39	27	-	66
충 청 북 도	1	150	32	2	185
충 청 남 도	10	184	44	-	238
전북특별자치도	45	141	44	1	231
전 라 남 도	5	261	41	1	308
경 상 북 도	-	273	48	31	352
경 상 남 도	217	45	42	23	327
제주특별자치도	18	68	12	27	125
공공기관(6)	80	305	0	13	398
국 립 공 원 공 단	72	82	-	1	155
한 국 도 로 공 사	2	-	-	3	5
한국수력원자력(주)	5	30	-	-	35
한국수자원공사	-	193	-	-	19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	-	-	-	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	-	9	9
합 계	1,945	2,471	706	182	5,304